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

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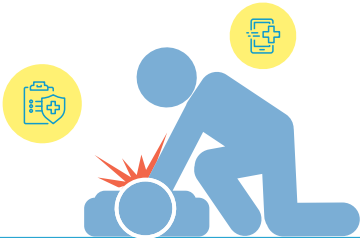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 ❶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음.
- ❷ 어린이이용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각 시설에 필요한 응급조치 수칙이 상이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응급조치 수칙을 제작하기 바람.
- ❸ 1차 응급조치 후에는 119 또는 의사 지시를 우선으로 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함.



어린이 응급처치 기초



상황별 어린이 응급처치 수칙



참고자료

① 응급처치의 정의	01
② 응급처치의 필요성	01
③ 응급상황 대비 준비사항	02
④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지침	03
①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05
②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10
③ 추락사고로 다쳤을 때	13
④ 놀람·끼임사고 등으로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14
⑤ 이물질을 삼켜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15
⑥ 열, 전기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	17
⑦ 약물·세제 등을 먹었을 때	18
⑧ 경련 및 발작이 발생한 경우	19
① 응급환자의 정의 및 증상	21
②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23

I 어린이 응급처치 기초



1.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는 다친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아픈 사람에게 즉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응급처치를 통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한다.

2. 응급처치의 필요성

적절한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거나 회복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응급처치를 받게 되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실습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야 한다.

3. 응급상황 대비 준비사항

1



사고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

응급처치,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 주변 어린이 통제 등



2



응급상황 발생 시 취할 연락처 사전조사

119, 112, 보호자, 어린이의 주치의 등

3



보호자 동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사전동의를 구하고,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방침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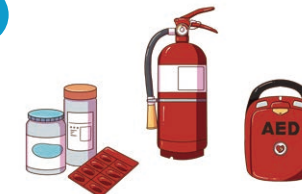
4



응급처치 매뉴얼 비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

5



상비 의약품과 응급처치 장비 비치

각종 비상약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화기 등 응급 장비를 준비하고 위치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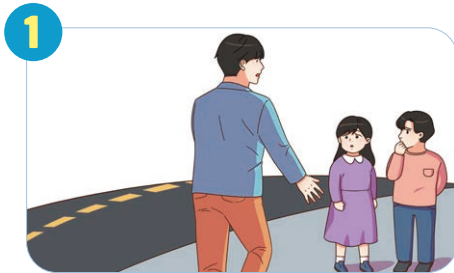
6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병력 확인 및 정보 공유

알려지, 천식, 당뇨 등 어린이의 병력을 확인하고 응급처치 방법을 사전에 숙지한다

4.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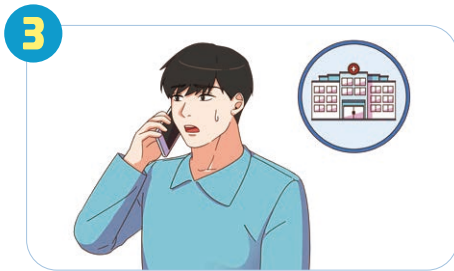
현장안전 여부 확인

화재, 도로 위 등의 안전 여부 점검 및
주변 어린이 통제



(외상)환자 움직임 최소화

2차 손상 방지



신속한 119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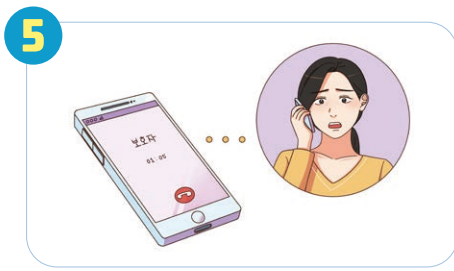
장소, 인원, 환자상태, 상황 등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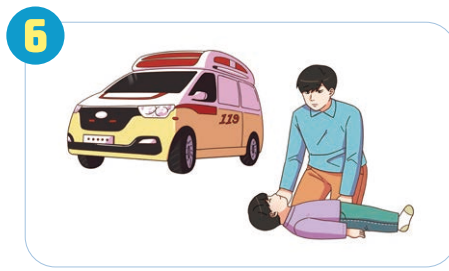
응급처치 시행

(응급의료전화상담원 활용)

119 도착 전까지 통화 유지



환자 보호자 연락



환자 방치 금지

119 구급대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도착 전까지 이탈 금지

II

상황별 어린이 응급처치 수칙



①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②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③ 추락사고로 다쳤을 때

④ 놀람·끼임사고 등으로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⑤ 이물질을 삼켜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⑥ 열, 전기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

⑦ 약물·세제 등을 먹었을 때

⑧ 경련 및 발작이 발생한 경우

1.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 영아(1세 미만) 심폐소생술



1

의식확인 및 도움 요청

발바닥을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아가야, 괜찮니?” 라고 소리친다.



2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장소, 인원, 아기 상태, 상황 등 설명



3

호흡확인(10초 이내)

- 아기의 얼굴→가슴, 배를 눈으로 호흡 확인
- 비정상호흡(헐떡이는 호흡), 무호흡 등의 증상 시 가슴압박 시행



4

가슴압박(30회) 시행

- 위치: 젖꼭지 연결선 중앙 바로 아래 가슴뼈(흉골)와 만나는 지점
- 방법: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 수직으로 압박
- 속도: 100~120회/분
- 깊이: 약 4cm



5

기도개방(머리를 젖히고 턱 들어올리기)

- 턱 아래의 연부조직 누르지 않기
- 아기의 머리를 과하게 젖히지 않기(수평)



6

인공호흡(2회)

- 1회당 약 1초 / 2회 진행
- 입으로 아기의 입과 코를 한꺼번에 덮거나 이마 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아기의 코를 막고 아기의 입으로 인공호흡 시행
-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만 숨을 불어넣기



7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반복

- 119 구급대원 도착 또는 아기가 소생될 때까지 반복



● 소아(8세이하)·성인 심폐소생술



1

의식확인 및 도움 요청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니?”라고 질문하면서
반응 확인



2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장소, 인원, 환자상태, 상황 등 설명



3

호흡확인(10초 이내)

- 환자의 얼굴→가슴, 배를 눈으로 호흡 확인
- 비정상호흡(헐떡이는 호흡), 무호흡 등의 증상 시
가슴압박 시행



4

가슴압박(30회) 시행

- 위치: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1/2부위
- 방법: 두 손을 겹쳐 각지 끼고 손꿈치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압박(소아의 경우 한 손 손꿈치 압박도 가능)
- 속도: 100~120회/분
- 깊이: 소아 약 4~5cm / 성인 약 5cm



5

기도개방(머리를 젖히고 턱 들어올리기)

- 턱 아래의 연부조직 누르지 않기
- 환자의 머리를 과하게 젖히지 않기



6

인공호흡(2회)

- 1회당 약 1초 / 2회 진행
- 이마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가슴
상승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기



7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반복

119 구급대원 도착 또는 환자가 소생될 때까지 반복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1
전원 켜기



2
두 개의 패드 부착
오른쪽 쇄골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



3
심장리듬 분석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4
심장충격 시행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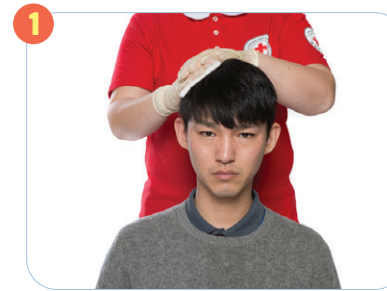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가슴압박 중단 시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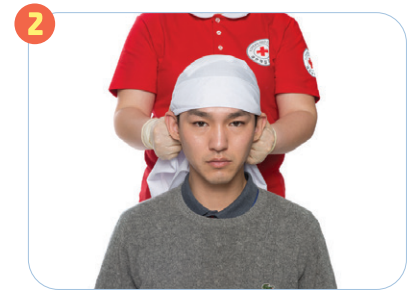
6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3~5 반복

2.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 머리를 부딪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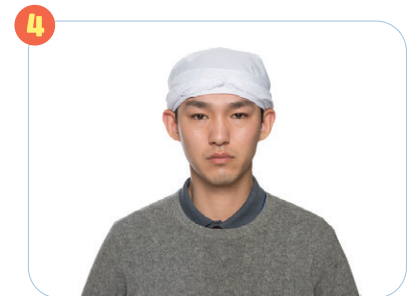
상처 부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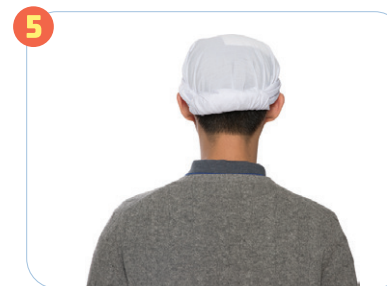
삼각건의 중심부분이
이마 중앙 눈썹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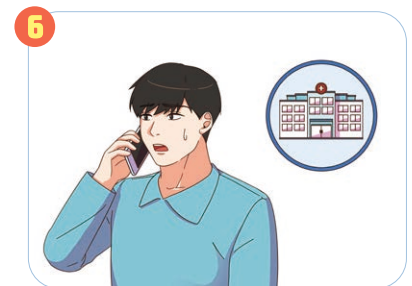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교차



교차시킨 삼각건의 양 끝을
이마 중앙에서 묶기



상처 부위를 피해서
매듭 정리



의식저하 또는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119 신고

● 손발을 부딪친 경우



1
손목, 발등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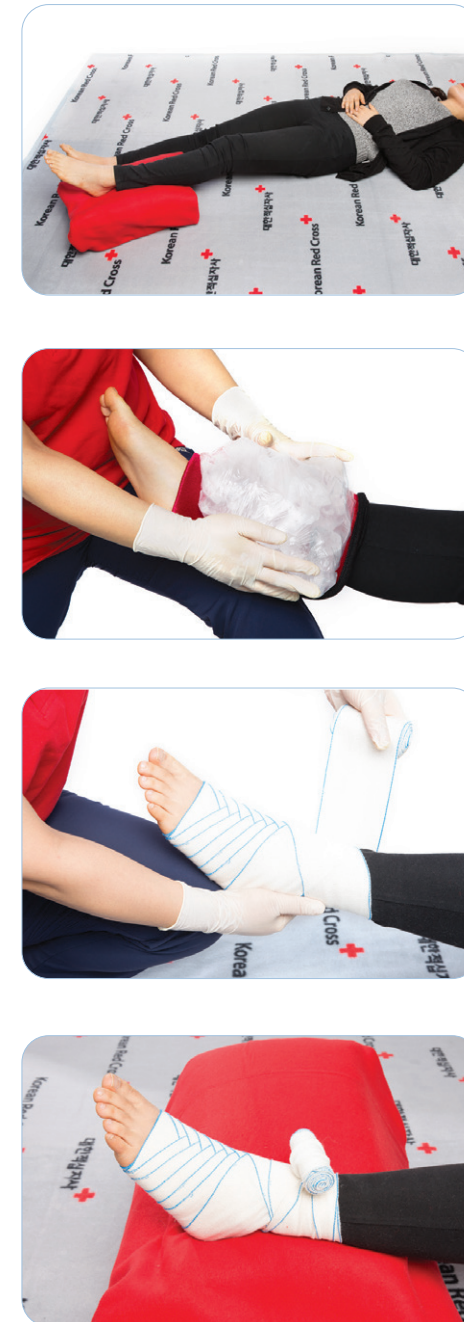
2
손(발)바닥과 손(발)목을
사선으로 감기

3
마지막은 손(발)목에서
마무리

4
혈액순환 상태 확인



● 외상으로 부종이 발생한 경우 (RICE 처치법)



1
Rest (안정)
4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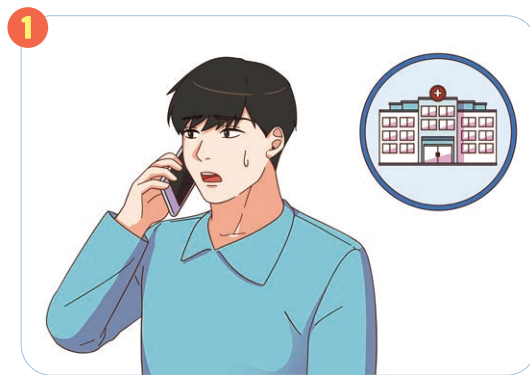
2
Ice (얼음찜질)
• 횟수: 하루 3~4회 혹은 그 이상
• 시간: 10~20분 적용
※ 20분 이상의 찜질 시간은 효과가 떨어짐

3
Compression (압박)
약 48~72시간 압박

4
Elevation (올려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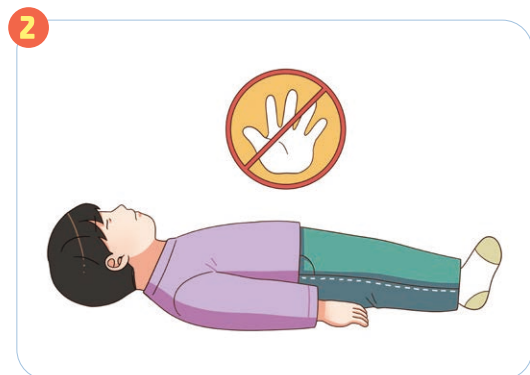


3. 추락사고로 다쳤을 때



신속한 119 신고

장소, 인원, 환자상태, 상황 등 설명



현장 주변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움직임 금지

상처 주변을 주무르거나 자세를 바꾸면
2차 손상 가능성
특히 목과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매우 주의



응급처치 시행

(응급의료전화상담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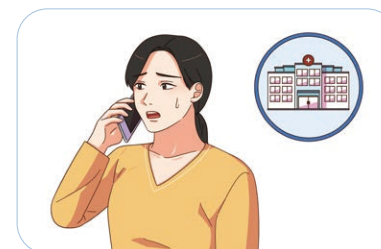
119 도착 전까지 통화 유지



의식 및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 실시

4. 놀림·끼임사고 등으로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1

신속한 119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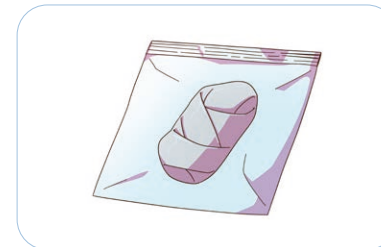
장소, 인원, 환자상태, 상황 등 설명



2

멸균거즈나 깨끗한 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압박 후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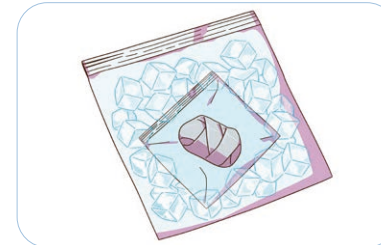
소독약, 지혈제 등을 뿌리는 행동은 좋지 않음



3

절단된 손가락을 멸균거즈나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싸 뒤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

절단 부위에 묻은 피나 이물질 닦으면 안 됨



4

절단된 손가락을 담은 비닐봉지를 얼음이 채워진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

절단된 손가락 부위에 얼음이 직접 닿으면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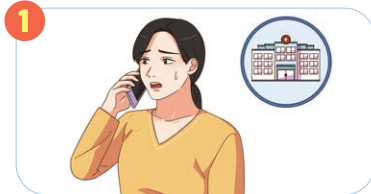
5

수지 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

119 안내나 구급대원 지도에 따름

5. 이물질을 삼켜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

● 영아(1세 미만) 기도폐쇄 처치



신속한 119 신고
장소, 인원, 아기상태, 상황 등 설명



영아의 아래턱을 단단히 잡고(목 손상 예방)
몸통과 다리 사이에 처치자의 팔뚝으로 받친 후
허벅지에 팔을 대고 지지한다.

영아의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위치시키고,
손꿈치로 양 어깨뼈(견갑골) 사이를 강하게
5회 내려친다. **1회에 약 1초**



가슴압박 5회 시행

- 등을 두드리던 손으로 영아의 뒤통수를 잡고
(목 손상 예방) 얼굴이 위로 향하게 돌린다.
- 젖꼭지 사이 가슴뼈 중앙을 두 개의 손가락으로
가슴압박 5회 시행 **1회에 약 1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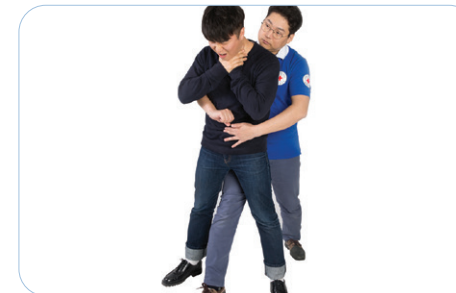


등 두드리기 5회, 가슴압박 5회 반복 중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 소아(8세이하) · 성인 기도폐쇄 처치 (하임리히 처치법)



1
이물질 유무 확인
“목에 뭐가 걸렸나요?” 등의 질문으로 확인



2
환자의 등 뒤에 서서 처치자의
한쪽 다리를 환자 다리 사이에 넣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한다.



3
한 손의 엄지 쪽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닿도록 주먹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
감싸진 채 뒤쪽, 앞쪽으로 세게 밀어올리기



4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시행

6. 열, 전기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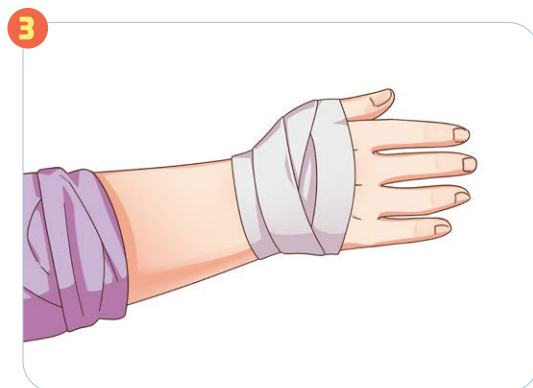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이상 식히기

- 저체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지
- 전기 화상은 전류 차단이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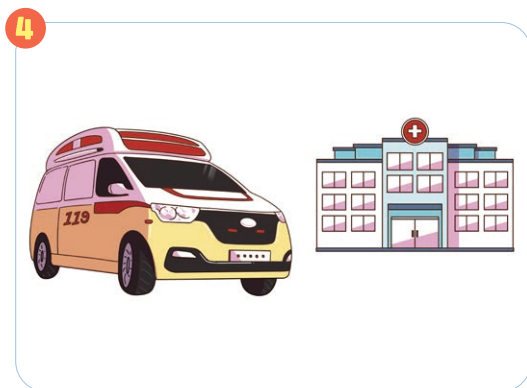


상처에 항생제 연고나 화상용 연고 바르기

수포나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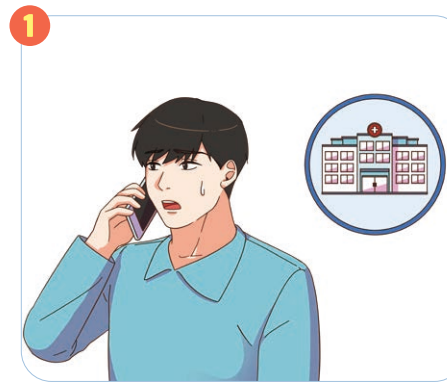
상처 부위를 멸균거즈로 덮기



2도 이상의 화상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화상 부위에 물집이 잡히거나 심한 통증,
또는 뼈나 힘줄이 보일 정도의 깊은 화상을
입은 경우 2도 이상의 화상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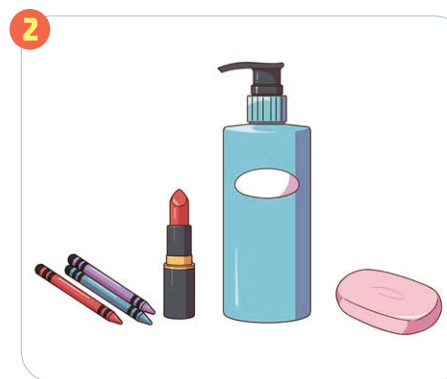
7. 약물·세제 등을 먹었을 때



신속한 119 신고

- 삼킨 물질의 종류, 양 등을 정확히 설명
- 삼킨 물질의 잔량 또는 포장지를 의료기관에 제출

!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무독성으로 판정된 경우 (구토가능)

- 립스틱, 목욕비누, 샴푸, 화장품류, 크레용, 물감, 볼펜잉크, 방향제 등
-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는다.

! 화장품류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매니큐어 제거제 (아세톤)는 예외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



구토를 하면 매우 위험한 경우

- 강산 또는 강알칼리를 마신 경우: 토하면 목이나 식도에 재산상 가능 (예: 산성 세제, 염소계 표백제)
- 석유제제를 마셨을 때: 구토물이 역류하여 폐로 들어가면 폐렴 가능 (예: 가솔린·등유 등)
- 의식이 없을 때: 구토물이 역류하여 폐로 유입 가능
-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때

8. 경련 및 발작이 발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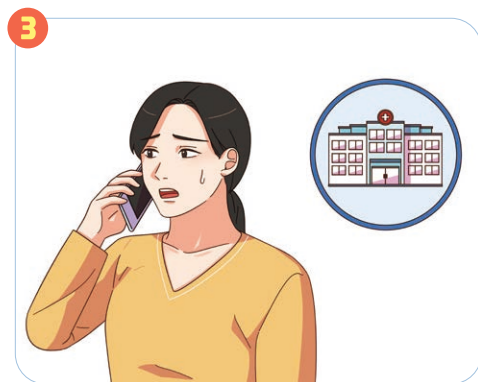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고 허리띠나 단추를 느슨하게 풀기



경련 및 발작 중 억지로 팔다리를 잡지 않고, 고개와 몸통을 옆으로 돌리기(침이나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에,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열제를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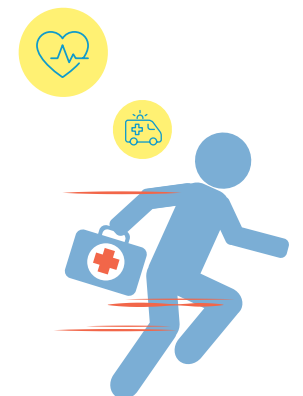


신속하게 119 신고

참고자료

① 응급환자의 정의 및 증상

②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참고자료1] 응급환자의 정의 및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 신부전 · 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 장폐색증 · 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 눈 · 코 ·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참고자료2]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분류	시설명(총 22개)
어린이 상주 시설 (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외국교육기관 (유치원 ·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⑦ 장애인 거주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 ·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 ·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왕래 시설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① 아동복지시설 ②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제곱미터 이상, 병원 · 병영 · 교도소 도서관 제외) ③ 사회복지관 ④ 유아교육진흥원 등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시설	①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 ② 유원시설 (대지면적 / 실내의 경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③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수 5천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시설) ④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⑤ 박물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⑥ 미술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⑦ 과학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진 : 대한적십자사 제공



행정안전부

Tel. 044-205-4227 www.mois.go.kr



대한적십자사

Tel. 02-3705-3705 www.redcross.or.kr